

제92조(계약 목적)

- ① 본원과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기간동안 제공되는 서비스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- ③ 입소자나 보호자가 입소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93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-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.
- ③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④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원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,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~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제94조(이용계약에 관한사항)

- ① 이용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(이하 “표준약관”)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(기관주체, 서비스이용자, 서비스 이용보호자), 인적사항, 계약기간, 계약의 변경, 계약의 해약 및 종료, 급여비용, 비용수납, 통지할 사항, 배상책임, 이용규정, 개인정보 보호의무, 인수인계원칙, 규정 위조항 및 해석,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입소자나 보호자, 1부는 시설이 보관한다.
- ③ 입소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입소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-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본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1. 등급판정서 사본 1부
 2.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
 3.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
 4. 이외의 서류는 “제90조(구비서류)”를 준용한다.
- ⑤ 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~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3.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4. 본원 내에서 본원 규칙이나 본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본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6.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를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 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7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제95조(급여비용/이용료)

-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”에 의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-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40조 제④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. 단, 입소보증금은 없다.

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(1개월(30일)기준) 요양보호사 입소자 2.1명당 1명 이상 배치

등급			본인부담금			비급여	본인부담금 + 비급여 합계금액		
			일반(20%)	감경(12%)*	감경(8%)*	식재료비	일반(20%)	감경(12%)	감경(8%)
1등급	1일	90,450	542,700	325,620	217,080	420,000 식사비 + 간식비	962,700	745,620	637,080
	30일	2,713,500							
2등급	1일	83,910	503,460	302,076	201,384		923,460	722,076	621,384
	30일	2,517,300							
3~5등급	1일	79,240	475,440	285,264	190,176		895,440	705,264	610,176
	30일	2,377,200							
등급외 자	1일	79,240	2,377,200				2,797,200		
	30일	2,377,200							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		면제			시에서 지원	면제		

-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
 1. 식재료비
 2. 상급침실료
 3. 아·미용비
 4. 병원 이송, 원내 특수차량이용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
- ④ 본원 이용 중 공단청구금액의 20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12, 8%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
-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.
- ⑥ 본원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,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, 일상생활지원, 취미, 오락, 운동, 간호, 생활지도, 일상동작훈련, 기능훈련, 기타 복지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.
- ⑦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.
- ⑧ 급여비용은 입·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%, 12시간 미만인 경우에

는 50%만 산정한다.

⑨ 시설급여 비용은 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” 따라 매년 정한 금액으로 산정한다.

1.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%를 산정(이하 ‘외박비용’이라 한다)하되, 1회당 최대 10일(1개월에 15 일)까지 산정할 수 있다.

2.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(기준시간은 밤 12시)에 산정하며,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,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
⑩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.

⑪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(1일기준)

비급여 항목	산출근거	(월)합계금액
식재료비	4,000원 * 3회(1일)	360,000원 (1일: 12,000원)
간식비	1,000원 * 2회(1일)	60,000원 (1일: 2,000원)
이미용비	5,000원(월 1회 미용사 출장 / 어르신 요구에 의한 서비스)	5,000원
상급 침실료	1인실 30,000원 / 2인실 15,000원	900,000원 / 450,000원
병원 진료비	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금	실비
병의원 동행비	사설 구급차 이용료	사설 구급차(정한금액)
약제비	병원 처방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본 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인이 요구하는약품 (영양제, 파스 등)	실비

⑫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입소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(원이 제공하지 않는 개인요구에 의한 특별 프로그램, 개인용 물품 등)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⑬ 본원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또한, 운영 상황 및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기존 적용 기준과 다를 수 있다.

제96조(급여비용 청구)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감면 처리된다.

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되고 식자재비는 시군구를 통하여 생계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갈음한다.

④ 급여비용은 표준약관에 따라 ‘을’의 등급판정결과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를 적용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.

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(장기요양급여의 범위) 각 항에 의거하여 표준약관에 따라 ‘을’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

⑥ 급여비용 중 1개월미만의 경우 일일 급여 산정, 31일의 경우 1일 추가비용으로 급여를 산정한다.

제97조(비용수납)

① 비용수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현금,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본원은 이에 대하여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.

- ② 입금계좌는 본원이 지정하는 은행과 예금주로 원장이 정한다. (농협 351-1266-1543-13 / 예금주 : 우리가족요양원)
- ③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선불 또는 후불로 익월 5일 이내에 청구되며,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.

제98조(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-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(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)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 - 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 - 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 - 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 - 4.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
 - 5.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.
- ④ 제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준약관에 따라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-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
 - 1.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 - 2.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.
 - 3.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
 - 4.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,군,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)-입소,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- 서류확인-공단에 입력-서비스 이용

제99조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)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 를 포함한 별도의 표준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
- ① 서비스제공자(이하 “갑” 이라 칭함)의 의무
 - 1. 입소자(이하 “을” 이라 칭함)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 - 2. “을”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3.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 - 4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의무
 - 5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
 - 6. 기타 “을”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- ② 입소자의 의무
 - 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 - 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
3.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
4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5.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③ 보호자(이하 “병”이라 칭함)의 의무

1.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
2.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
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
5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제100조(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)

①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과 같다.

1. 신원인수 방법은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 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.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: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인수인계에 철저히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3.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4. 본원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5.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

6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
7. 장기간 부재) 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‘갑’ 이 판단할 경우,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

8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9.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

10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,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.

제101조(계약의 해제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3.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4. 본 규정이나 본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본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
6.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를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7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제101조의2(입퇴소위원회)

입소 및 퇴소자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. ① 입퇴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입퇴소위원회 개최는 필요시 시설장(대표)이 소집하고 등외자 등 입소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입소자의 경우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입퇴소위원회는 입소 중 제101조(계약의 해제)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해야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직원과 보호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정취할 수 있으며, 입(퇴)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④ 입퇴소위원회는 입소시 등외자의 입소비, 상급침실료의 비용 경감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⑤ 입퇴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5일 이내 입(퇴)소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